

## 건설기술인 행정처분 공고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 등을 위반한 아래 기술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27일  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

### 1. 대상자

당사자(건설기술자)		처분내용	처분의 원인사실
성명	생년월일		
송장환	67.01.18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10. 13. ~ 2023. 1. 12.)	근무경력 거짓신고
하장욱	73.02.20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10. 13. ~ 2023. 1. 12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이종수	63.02.13.	업무정지 3개월 (2022. 10. 13. ~ 2023. 1. 12.)	근무경력 거짓신고
최홍일	68.01.21.	업무정지 4개월 (2022. 10. 13. ~ 2023. 2. 12.)	근무경력 거짓신고

### 2. 법적근거

-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[별표 1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[별표 3]
- 舊 「건설기술관리법」 제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 [별표 2]

### 3. 유의사항

-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(송달일)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,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### 4. 기타방법

- 위 공고문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 행정처분 담당자(02-2110-6724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